

# 교원업적평가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51조에 의거 교원의 교육·연구·봉사활동에 관한 업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평가영역 및 기준)** 교원의 업적은 교육업적, 연구업적, 봉사업적의 3개영역으로 구분한다.

1. 교육업적: 교육업적의 평가는 수업담당 실적(책임시수 비율), 휴강 및 보강, 강의 계획서 제출, 성적 제출, 학칙에 의한 성적평가, 강의평가 및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적을 의미한다.

### 2. 연구업적

가. 인문·사회계열 교원의 연구업적은 <교원인사규정> 제6장 제38조 1항에서 정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한하며, 그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다.

단독논문 주저자 국제전문학술지 200% 국내전문학술지 100%

2인논문 주저자 국제전문학술지 150% 국내전문학술지 60%

2인논문 교신저자 국제전문학술지 100% 국내전문학술지 40%

(예능계열 교원의 논문도 동일하게 적용)

나. 음악분야에 속한 교원의 연구실적은 공연 실적으로 평가하며, 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

(가) 국내의 대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도시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된 장소에서의 독창회, 독주회, 개인발표회 및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회는 100%, 전국 중주, 전국 중창 또는 이에 준하는 작품발표회는 70%를 인정하고, 2인 공동발표회는 50%를 인정한다. 국외에서의 연주일 경우, 공인된 정상급 단체의 초청 공연과 이에 준하는 연주일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.

(나)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가지는 단체 또는 나호 (가)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인정된 종합연주회의 주연 및 협연 50%, 오페라 및 오라토리오의 주연, 연출, 또는 이에 준하는 작품 발표는 100%를 인정하며, 오페라의 조연은 50%를 인정한다.

(다) 공인된 국제음악제에 독주자, 독창자, 협연자 또는 발표자로 초대되어 연주했을 때에는 70%를 인정한다.

(라) 나호 (가)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인정된 종합연주회의 독주, 독창, 중주, 중창, 작품발표 또는 편곡은 15%를 인정한다. 단, 관현악단, 합창단의 단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

(마) 나호 (가)의 100%에 해당하는 발표회의 전곡 반주 또는 지휘는 30%를 인정하고, 50%에 해당하는 발표회의 전곡 반주 또는 지휘는 15%를 인정한다.

(바) 광역시급 이상의 시립단체,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정상급 단체의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의 지휘는 위 해당 항목 실적물의 100%를 인정한다.

(사) 동일 내용의 연주(개인발표회에 한함)인 경우, 두 번째 연주는 해당점수의 50%를 인정한다.

(아) 교회 및 기타 장소에서 발표된 것은 순수한 예술발표에 한해서 그 발표자 및 발표 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(예배 또는 선교행사 등의 일부로 발표된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).

(자) 실용음악 공연의 경우, 단독공연은 공연 전체의 주연주자 또는 주발표자로 참여한 50분 이상의 공연을 100% 인정한다. 공연주체가 1명인 단독공연이거나 밴드 리더(지휘)일 경우 100% 인정한다. 공연 구성원이 4인 이하의 공연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50%,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연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30%, 10인 이상의 공연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15%, 객원 혹은 세션 공연(악기연주 및 코러스)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15%, 게스트 출연 공연(20분 미만이거나 3곡 이하)은 단독공연 평가기준의 10% 인정한다.

(차) 승진 및 재임용시 독창회, 개인발표회가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(개정 2019.3.1.)

3.봉사업적: 교육 및 연구 활동 이외에 교내·외 및 학회 및 기타활동 관련된 업적을 의미한다.

4.종합 평가: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대상자의 교육, 연구, 봉사영역 평가결과를 수합, 평균치를 산출하며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, 종합의견을 교원업적 종합평정표에 기술한다.

## 제2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(개정2015.3.1.)

**제4조(교원업적평가위원회)**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겸무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(개정2015.3.1.)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업적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2. 관련 제 규정의 개정
3. 교원의 교육, 연구, 봉사업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④ 위원회에 서기를 두며 관련 업무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.

⑤ 심사위원 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②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교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6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## 제3장 업적의 평가

**제7조(평가기준)** 교원업적평가의 기준은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기준을 정한다.(개정2015.3.1.)

**제8조(교육업적의 평가기준)** 교육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<별표 1>에 의한다.

**제9조(연구업적의 평가기준)** 연구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<별표 2>에 의한다.

**제10조(봉사업적의 평가기준)** 봉사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<별표 3>에 의한다.

**제11조(교원업적 종합 평정표)** 교육, 연구, 봉사영역 평가결과를 수합, 평균치를 산출 및 판정은 <별표 4>에 의한다.

## 제4장 업적의 평가방법 및 절차

**제12조(평가회수 및 기간)** 교원업적의 평가는 2년 단위로 실시한다. 단, 위원회의 결의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실시 할 수 있다.(개정2015.3.1.)

**제13조(평가대상의 업적 및 구비서류)** ① 평가대상의 업적은 본인이 업적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, 제출기한을 경과하거나 증빙자료 및 서류가 미비된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 단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② 구비서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업적평가표(개정2015.3.1.)

가. 교육업적평가표<별표 1>

나. 연구업적평가표<별표 2>

다. 봉사업적평가표<별표 3>

2. 증빙서류

3. 기타 관련 자료

**제14조(업적의 평가방법)** ① 교원의 업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평가위원 본인이 평가대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며, 위원장이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 위원장을 대행한다.

**제15조(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)**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업적에 대한 실적을 교무처 업적평가조사에 의거 작성하여, 매학기 수업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위원장의 확인 검토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위원장은 매학기 수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(개정2015.3.1.)

**제16조(이의신청 및 처리)** 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제출서류 미비 등 평가대상교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며,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그 재심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
**제17조(평가예외)** 연구 년, 장기해외연수 등의 기간에는 연구업적만을 평가하며 교육 및 봉사업적은 직전(또는 직후) 학년도의 업적으로 갈음한다.

**제17조의 1(휴직예외)** 심사대상자의 재임용기간 중에 휴직 기간(제17조에 의한 휴직 제외)이 포함될때에는 재임용심사 기간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심사한다.(신설2014.9.1.)

##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기타

**제18조(평가결과의 활용)** 평가결과는 교원의 재임용, 승진임용 등의 심사에 활용한다.

**제19조(재임용 기준)**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다. 단 연구업적은 교원인사규정 제6장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준한다.(개정 2012.7.21.)

| 직 위   | 평가대상기간 | 영역별 평점 |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|        | 교육업적   | 연구업적 | 봉사업적 |
| 조 교 수 | 최근 6년  | 240    | 600  | 240  |
| 부 교 수 | 최근 6년  | 240    | 600  | 240  |
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에 대하여 심의할 시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

**제20조(승진임용 기준)**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다. 이 경우,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은 40%이상이어야 한다.(개정 2012.7.21)

| 구분      | 평가대상기간 | 영역별 평점 |      |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|        | 교육업적   | 연구업적 | 봉사업적 |
| 조교수→부교수 | 최근 6년  | 240    | 600  | 240  |
| 부교수→교수  | 최근 6년  | 240    | 600  | 240  |

**제21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22조(준용)** ① 휴직 만료 후 복직한 교수가 휴직기간이 재임용 심사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.

② 판결에 의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.(신설 2013.8.9.)

#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단, 제3조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임용계약자부터 적용한다.)

별표 1

피평가자 소속:

직급:

성명:

교육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

| 평가 영역<br>(배점)                  | 평가 항목<br>(항목별 배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기준(항목별 배점)<br>*해당 번호에 O표 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자<br>평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강의(60)<br>*피평가자는<br>표시하지<br>않음 | 책임시수 비율(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기준시수 충족(10)<br>② 70%이상 충족 (5)<br>③ 70% 미만 (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책임시수:<br>담당시수: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휴강 및 보강(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휴강 없음: 보강 (10)<br>② 휴강 후 보강 없음(5)<br>③ 2회 이상 무단휴강(0)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과목 임의선정<br>휴강 무:<br>휴강: 회<br>보강: 회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의계획서 제출(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전 과목 제출 (10)<br>② 1~2과목 미 제출(5)<br>③ 전 과목 미 제출 (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목 수:<br>제출 수: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적 제출(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기간 내 제출 (10)<br>② 1~2일 지연 (5)<br>③ 3일 이상 지연 (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간준수:<br>지연일수: 일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칙에 의한<br>성적평가(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전 조건 충족(10)<br>② 일부조건 충족(5)<br>③ 전 조건 미충족(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과목 임의선정<br>상대: %<br>절대: %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의 평가(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만족도 85- 100(10)<br>② 만족도 70 - 84 (7)<br>③ 만족도 50 - 69 (3)<br>④ 만족도 0 - 49 (0) | 1과목 임의선정<br>만족도 %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학생지도<br>(40)                   | 신입·편입생 유치<br>기여도(2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4명 이상 (20)<br>② 2 ~ 3명 (10)<br>③ 1명 이하 (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당해연도<br>신입생 명<br>편입생 명<br>계 명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학생 지도관리(10)<br>(지도학년: 학년)<br>*피평가자는 표시하지<br>않음 | ① 재학률 90% 이상(10)<br>② 재학률 80~89% (5)<br>③ 재학률 79% 이하 (0)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전학기 대비<br>재학률 %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학 및 취업지도(10)<br>(증빙자료 첨부)                      | ① 60% 이상 (10)<br>② 20 ~ 59% (5)<br>③ 19% 이하 (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당해연도 졸업생<br>진학·취업률 %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계 100점(해당되지 않는 항목: 총점 조정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          |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   위    확인자    직급    성명\_\_\_\_\_인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   평가자    직급    성명\_\_\_\_\_인

별표 2

피평가자 소속:

직급:

성명:

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% 인문·사회·사범계)

| 구 분   | 평 가 항 목  | 평가 항목(배점 %)<br>*해당란에 O표 할 것 | 확 인 | 평가자<br>평점(%)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학술 논문 | ① 국제 학술지 | ① 150%                      | ①   |              |
|       | ② 국내 학술지 | ② 100%                      | ②   |              |
|       | ③ 기타 학술지 | ③ 50%                       | ③   |              |
| 계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
※ 기타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제외한 전공분야 학술단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논문

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% 예능계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 항목(배점 %)<br>*해당란에 O표 할 것          | 평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| 확 인 | 평가자<br>평점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개인 발표회                   | 독주, 독창회(100%)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<br>연주회장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휘, 전곡 반주(30%)                       | 위와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공동 발표회                   | 전곡 중주, 전곡 중창<br>(70%)                | 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<br>연주회장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인 공동(5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와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오페라 또는<br>오라토리오          | 주연, 협연, 연출, 작품<br>발표(100%)           | 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<br>회장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연(5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와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국제 음악회                   | 독주, 독창, 협연, 발표<br>(70%)              | 공인 국제음악제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종합 연주회                   | 독주, 독창, 중주,<br>중창, 작품 발표,<br>편곡(15%) | 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<br>연주회장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합창단,<br>오케스트라            | 지휘(10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광역시급 이상 시립단체<br>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 |     |              |
| 개인 발표회<br>(동일내용 두<br>번째) | 독주, 독창(50%)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<br>회장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휘, 전곡 반주(15%)                       | 위와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%            |

\* 승진 및 재임용 시 독창회, 개인 발표회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           위    확인자    직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인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평가자    직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인

별표 2 (2019년도 임용계약자부터)

피평가자 소속:

직급:

성명:

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% , 인문사회계열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평 가 항 목                  | 평가 항목(배점 %)<br>*해당란에 O표 할 것 | 확 인    | 평가자<br>평점(%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학술논문(단독)             | ① 국제 전문학술지<br>② 국내 전문학술지 | ① 200%<br>② 100%            | ①<br>② |              |
| 학술 논문<br>(2인 논문 주저자) | ① 국제 전문학술지<br>② 국내 전문학술지 | ① 150%<br>② 60%             | ①<br>② |              |
| 학술논문<br>(2인 논문 교신저자) | ① 국제 전문학술지<br>② 국내 전문학술지 | ① 150%<br>② 40%             | ①<br>② |              |
| 계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   위    확인자    직급

성명 \_\_\_\_\_ 인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   평가자    직급

성명 \_\_\_\_\_ 인



피평가자 소속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급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:

## 1. 클래식

## 2. 실용음악 공연

\* 승진 및 재임용 시 독창회, 개인 발표회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- 9 -

별표 3

피평가자: 소속:

직급:

성명:

봉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

| 평가영역(배점)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 항목(항목별 배점)<br>*해당란에 O표 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평가자<br>평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확 인                   | 평가자<br>평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교내 봉사 (50)<br>*피평가자는<br>표시하지 않음 | ① 처장급 이상(30)<br>② 학과장·연구소장급(20)<br>③ 각종 위원회 위원 (10)<br>④ 학생 지도교수(10)<br>⑤ 각종 회의 참석(5)<br>(무단 불참시 회당 -5점)<br><br>* 중복되더라도 50점이 상한임 | ①<br>②<br>③<br>④<br>⑤<br><br>계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<br>②<br>③<br>④<br>⑤ |            |
| 교외 봉사 (20)                      | 증빙자료 첨부<br>① 자치·공공단체 위원(10)<br>② 각종시험 채점위원(공인 대회,<br>공쿠르 심사위원) (10)<br><br>* 중복되더라도 20점이 상한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<br>②<br><br>계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<br>②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학회 활동 (20)                      | 증빙자료 첨부<br>① 학술단체·기관 임원(10)<br>② 학술단체·기관 회의 사회,<br>발표, 토론 등 (5)<br>③ 학술단체 회원(1학회당 5점)<br><br>* 중복되더라도 20점이 상한임                    | ①<br>②<br>③<br><br>계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<br>②<br>③           |            |
| 기타 활동 (10)<br>*피평가자는<br>표시하지 않음 | ① 학사행정 협조(5)<br><br>② 동료와의 인화관계(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5. 4.<br>3. 2.<br>1. 0.<br>② 5. 4.<br>3. 2.<br>1. 0.<br>계 점 | ①<br>②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           위    확인자    직급

성명 \_\_\_\_\_ 인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           평가자    직급

성명 \_\_\_\_\_ 인



교원업적 종합 평정표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피평정자                   | 소속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직급:              | 성명: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가 영역                  | 평가 항목(배점)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평<br>점<br>누<br>계 | 평<br>균 | 비<br>고                     |
| 교<br>육<br>(100)        | 강의<br>(60)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책임시수 비율(10)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조교수 240점 이상<br>부교수 240점 이상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휴강 및 보강(10)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강의계획서 제출(10)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성적 제출(10)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학칙에 의한 성적평가(10)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 강의 평가(10)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학생지도<br>(40)                     | ① 신입·편입생 유치기여도(20)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재학생 지도관리(10)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진로 지도(10)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계(100) * 피평정자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: 총점 조정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구(%)                  | 인문·사회·예능계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국제전문 학술지(200%)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조교수 600% 이상<br>부교수 600% 이상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국내전문 학술지(150%)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발표업적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계(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봉<br>사<br>(100)        | 봉사업적 총괄(100)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조교수 240점 이상<br>부교수 240점 이상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계(100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비고: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가위원장의 종합 의견(부적격 판정 시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평가자 직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\_\_\_\_\_